

타협의 조건을 찾아서, 그리고 불비(不備)했던 기득권 - 김정렬 선거관리위원장님께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님의 게시글 「이제는 타협의 시간, 총장 선거 진행의 구비조건」(2021. 6. 1.)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몇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서는 사회통념적으로나 교수회 규정상으로는 선거법규에 따라 엄정중립 및 공정한 선거관리, 곧 “총장후보 선거의 공정한 사무 관리”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여기에 비추어볼 때, 상기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거나 비중립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익을 위한 개인의 뜻이든 주변인들의 여론을 수렴·반영한 것이든 사회통념적 선관위 위원이나 위원장의 직분에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직원위원들이 ‘선거규칙의 확정 및 공정관리 의사 공표’까지 참여 보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에서, 임명된 총장이 “재단과의 성과계약제나 직원과의 다면평가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총장은 2년 후에 교수들의 중간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신임 요건에 해당하는 총장은 자진사퇴하거나 교수 유권자들의 중간평가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투표자 2/3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남은 2년의 잔여 임기를 보장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총장의 불신임 여부를 교수 유권자가 결정하겠다는 뜻인데, 법인과 우리대학에서는 사립학교법상 설립 및 운영 주체와 학사행정 체제가 교수 유권자의 하위 신분이나 조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구성체로 이뤄진 대학에서 총장의 선임과 해임 여부가 일부 구성원의 단독적이고 자의적인 절차로 이뤄진다는 것이 보편 타당해 보이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직원노조 위원장은 노조원이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교수회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교수 유권자로 국한하여 진행하면 적법하고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직원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의지로 직선 총장의 퇴진까지 가능해진 상태”라는 것도 교수 유권자의 결정이 최상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직원의 의지만으로는 총장 퇴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무리한 지분확보 전략보다 20% 정도의 단계적 인상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지만, 직원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리한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첫 선거에 참여해서 직전 선거까지 한 번도 물리력(단체행동)이나 법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직전까지의 선거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임시이사사회체제라는 특수한 환경이었고, 이에 대학구성원들이 단합하여 재단과 대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일념이었으며 직원사회는 위상과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공동체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라는 표현에 심각한 모멸감마저 듭니다만, 이 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규 교원과 직원의 대비 비율이라면,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1994년에 그리고 2000년에 임용된 직원이, 2010년에, 2020년에, 2021년에 임용된 교원보다 선거인의 표 반영에서 20%에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학에 대한 공로가 달라서, 차이가 발생해서 혹은 학력이나 직종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차등적 선거행위를 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인 직선제라고 호명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본 위원장은 극단의 위기를 맞은 대학을 안정시키고자, 조속한 총장선임을 위한 법인 주관의 3자 협의(회의)에서 노조대표로서 직원사회의 성찰과 아울러 원인제공과 책임소재에 대해 법인과 교수회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학 위기의 책임에서 교수회가 총장후보 선출에서 기인하는 결과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장선거에서 90%에 해당되는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대학의 파탄이나 위기에 대한 책임도 90% 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직원사회가 10% 책임 지면 되고, 대학재정이 붕괴됐으면 역시 비율대로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영과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과 고통은 선거인 지분도 미미한 직원사회로 함께 돌리며 ‘모두가 잘못했느니, 모두가 책임이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편 어떤 교수님이 “직원도 기득권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애초에 기득권은 없었습니다. 관행적으로 형성한 기득권은 법적 제도 앞에서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관습법 체제가 아니라 성문법주의라는 것을 중학생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이 있고, 직원사회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명문화된 총장후보 및 선거행위에 민주적인 원칙 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상응한다면 직원의 기득권도 법적 기득권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대학 총장선거에서 기득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본 위원장도 참여한 1990년대 초반의 대학민주화 투쟁에서 획득했거나 합의한 약속이었고, 법인의 임시체제에서 발생시키거나 용인한 과도적 관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을 구성원 모두 인식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과 미래에 대응하지 못하는 관념으로 전승되는 통념에서 함께 벗어나야 합니다. 솔직한 대화와 구성원을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양보를 통해 타협의 길을 찾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학-건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이철환 드림